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37호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45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46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45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6.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정수입 근거 및 노력도 반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인 보통세에는 군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에 산입된 보통세 금액을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안 제59조제2항)

- 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은 ‘시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어 군 산정기준액도 포함된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 산정기준액에 군 산정기준액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

나. 구 조정교부금 보정수입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61조제4항)

- 향후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기준수입액의 산정에 있어 구(區)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 다. 구 조정교부금 산정시 노력도를 반영한다는 규정 신설(안제61조제9항)
- 조례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조정교부금 노력도 반영을 규칙에 정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노력도 항목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노력도 반영 관련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여 건전재정 도모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 440-1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5호 중 “제61조제2항부터 제3항”를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제6호 중 “제61조제4항부터 제7항”를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보통세의”를 “보통세(제1항에 따라 균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 ⑨ 시장은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세입증대와 세출효율화를 위한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별표 3과 별표 4의 제목 중 “제61조제5항”을 “제61조제6항”으로 하고, 별표 3의 단서 중 “제61조제7항”을 “제61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1.~4. (생략)</p> <p>5. “기준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u>제61조제2항부터 제3항</u>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p> <p>6. “기준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u>제61조제4항부터 제7항</u>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4. (현행과 같음)</p> <p>5. ----- ----- ----- <u>제61조제2항부터 제4항</u> -----.</p> <p>6. ----- ----- ----- <u>제61조제5항부터 제8항</u> -----.</p>
<p>제5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생략)</p> <p>② 제57조에 따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영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u>보통세의 100분의 20</u>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59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보통세(제1항에 따라 구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한다)</u>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제61조(조정교부금의 산정) ① ~	제61조(조정교부금의 산정) ① ~

현행	개정안
<p>③ (생략) &lt;신 설&gt;</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제5항의 전년도와 전년도의 직전 2개년도의 연도별 적용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준 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구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의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단, 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우선 보전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구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제6항의 ----- ----- -----.</p> <p>⑧ 제5항 및 제6항에 ----- ----- ----- ----- ----- -----.</p> <p>⑨ 시장은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세입증대와 세출효율화를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p>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p>□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p> <p>○ 제61조(조정교부금의 산정) ①~⑥ (생략)</p> <p>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구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의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단, 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우선 보전할 수 있다.</p> <p>○ 제104조(시행규칙 등) ①이 조례의 각 분야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사항 없음”</p>
<p>특이사항</p>	<p>“해당사항 없음”</p>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46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6.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보정수요 및 노력도 항목을 보완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개선(안 제21조 및 별표 3, 안 제 28조제2항 및 별표 4)

- 도로·공원개설비 보정수요 2종 신설, 원도심 가중치 부여 등 보정수요 관련 규정 보완(별표 3)
-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 노력도 항목 신설·보완, 조정지수 확대, 상쇄효과 제거를 위한 노력도 관련 규정 보완(별표 4)
- 보정수요와 노력도항목 산정기준을 함께 규정한 별표를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나.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2018.11.5.)으로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5장 삭제)

###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 440-1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보정대상 및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를 “보정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의 노력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3]

보정항목 및 산정기준 (제21조 관련)

구분	보정항목		산정기준	비고
	분야	부문		
보정 수요	수송 및 교통	교통관리비	○ 도로개설비 도로면적 증감 × 교통관리비 단위비용 × i ※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등 자치구가 개설 하지 않은 신설도로면적은 제외할 수 있 으며, 이들 면적을 포함할 경우 그 외 지 역의 조정지수는 300% 범위 내에서 가중 적용	i = 조정 지수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행정비	○ 공원관리비 공원면적 × 도시행정비 단위비용 × i ※ 증감면적에 대하여는 300% 범위 내 에서 가중 적용하되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등 자치구가 조성하지 않은 신설공원면 적은 가중 적용 제외	

※ 보정항목별 조정지수(i)는 보정수입·수요 총액, 노력도 세입확충·세출효율화  
산정액 총액, 보통교부세의 유사 항목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별표 4]

노력도 항목 및 산정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노력도 항목	산정기준	비고
세입 확충	시·구세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징수율 해당 구 전전년도 징수액 × [1 - (해당 구 징수율 ÷ 구 평균 징수율)] × i * 징수율 = 징수액 ÷ 부과액</li> <li>○ 지방세징수율 제고비율 해당 구 전전년도 징수액 × [1 - (해당 구 징수율 제고비율 ÷ 구 평균 징수율 제고비율)] × i * 징수율 제고비율 = 전전년도 징수율 ÷ 전전년도 직전 3년 평균 징수율 * 징수율 = 징수액 ÷ 부과액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li> <li>○ 지방세 체납액 (전전년도 해당 구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구 지방세 체납누계액) × i ※ 전전년도 체납누계액에는 전전년도 기준 과년도부과분 결손처분액을 포함하고,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 및 갹송중이거나 9.1. 이후 갹송이 종료된 미수납액은 제외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li> </ul>	i = 조정 지수
	시·구 세외수입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 징수율 해당 구 전전년도 징수액 × [1 - (해당 구 징수율 ÷ 구 평균 징수율)] × i * 징수율 = 징수액 ÷ 부과액 ※ 징수액 및 부과액은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li> <li>○ 세외수입 체납액 (전전년도 해당 구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전년도 해당 구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i ※ 체납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 전전년도 체납누계액에는 전전년도 기준 과년도부과분 결손처분액을 포함하고,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 및 갹송중이거나 9.1. 이후 갹송이 종료된 미수납액은 제외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li> </ul>	

구분	노력도항목	산정기준	비고
세출 효율화	환경보호 청소행정비	○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해당 구 쓰레기처리비 기초수요액 × [(해당 구 자립도 ÷ 구 평균 자립도) - 1] × i	i = 조정 지수
	기타 행정운영비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전전년도 해당 구 행사·축제성경비 × [1 - (해당 구 행사·축제성경비 감축비율 ÷ 구 평균 행사·축제성경비 감축비율)] × i * 감축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성경비 ÷ 총결산액) ÷ (전전전년도 행사·축제성경비 ÷ 총결산액)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예산집행 노력	○ 적정 집행율 유지 해당구 불용액 ×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불용률 - 해당 구 불용률*) × i *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 최종 예산 현액 ※ 불용액 중 초과세입,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불용액은 제외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노력도항목별 조정지수(i)는 보정수입·수요 총액, 노력도 세입확충·세출효율화 산정액 총액, 보통교부세의 유사 항목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준 수요액의 보정) 조례 제61조제7항의 기준수요액의 보 정대상 및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기준 수요액의 보정) --- ----- 보 정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건전재정을 위한 노력 반 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구의 노력정도 는 구의 시·구세 징수실적(쟁송 사항은 제외한다)과 과년도 시· 구 세외수입 체납징수율로 하되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건전재정을 위한 노력 반 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의 노력정도 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	<삭 제>
제30조(예산정책토론회 개최방법 등) 조례 제83조제2항에 따라 분 과위원회에서는 개최장소 및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예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삭 제>
1. 주제발표자: 해당 실·국·본부 장	
2. 진행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이 있고, 토론회 진행이 가능한 사람 1명	
3. 토론자: 해당 분야 공무원, 해당	

현행	개정안
<p><u>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천광역시회의의원,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 10명 이내</u></p>	
<p><u>제31조(협의회의 기능) 조례 제8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u></li> <li><u>2.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등</u></li> </ol>	<p><u>&lt;삭 제&gt;</u></p>
<p><u>제3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은 예산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및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u></p>	<p><u>&lt;삭 제&gt;</u></p>

현행	개정안
<p>한다.</p> <p>제33조(임기) ①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u>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lt;삭 제&gt;</p>
<p>제34조(회장의 직무) ① <u>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lt;삭 제&gt;</p>
<p>제35조(회의) ① <u>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② <u>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lt;삭 제&gt;</p>
<p>제36조(간사) <u>협의회에 협의회의</u></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u>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이 된다.</u>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li> </ul> <p><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② (생략)</li> <li>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li> </ul>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1조(조정교부금의 산정) ① ~ ⑥ (생략)</li> <li>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있어서 구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의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단, 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우선 보전할 수 있다.</li> <li>○ 제68조(재정진단) 시장은 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과 군·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군·구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li> <li>○ 제104조(시행규칙 등) ①이 조례의 각 분야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li> <li>② (생략)</li> </ul>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생략)</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